

○委員長 李喆鎬 그러면 本件에 대해서 먼저 質疑하실 委員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더이상 質疑하실 委員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서울特別市敎育監이 提出한 서울特別市立學校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해서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委員 여러분, 異議 없으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參 照)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국민학교(남부)중 “서울문교국민학교”란 다음에 “서울신대립국민학교”란을 국민학교(북부)중 “서울노일국민학교”란 다음에 “서울녹천국민학교”란을 국민학교(강서)중 “서울등양국민학교”란 다음에 “서울등명국민학교”와 “서울등현국민학교”란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국민학교(남부)

54	서울신대립국민학교	영등포구 대림동 970-1
----	-----------	----------------

국민학교(북부)

80	서울녹천국민학교	노원구 월계동 316-4
----	----------	---------------

국민학교(강서)

53	서울등명국민학교	강서구 가양동 1272
54	서울등현국민학교	강서구 등촌동 54-6

[별표 2]의 중학교(북부)중 “중계중학교”란 다음에 “녹천중학교”와 “노일중학교”란을 중학교(강서)중 “삼정중학교”란 다음에 “화원중학교”, “등원중학교”, “등명중학교” 및 “성재중학교”란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중학교(북부)

38	녹천중학교	노원구 월계동 247
39	노일중학교	노원구 상계동 산 95-1

중학교(강서)

25	화원중학교	강서구 화곡동 산 144-4
26	등원중학교	강서구 등촌동 89-3
27	등명중학교	강서구 가양동 1282
28	성재중학교	강서구 가양동 68-7

[별표 3]의 고등학교중 “서초전자공업고등학교”란 다음에 “한강전자공업고등학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고등학교

74	한강전자공업고등학교	영등포구 양평동4가 315
----	------------	----------------

[별표 7]의 유치원(동부)중 “서울중곡국민학교병설유치원”란 다음에 “서울동원국민학교병설유치원”란을, 유치원(서부)중 “서울홍제국민학교병설유치원”란 다음에 “서울창천국민학교병설유치원”란을, 유치원(남부)중 “서울윤중국민학교병설유치원”란 다음에 “서울두산국민학교병설유치원”란을, 유치원(중부)중 “서울계동국민학교병설유치원”란 다음에 “서울충무국민학교병설유치원”란을, 유치원(강동)중 “서울잠일국민학교병설유치원”란 다음에 “서울고명국민학교병설유치원”란을, 유치원(강서)중 “서울정곡국민학교병설유치원”란 다음에 “서울내발산국민학교병설유치원”란을, 유치원(동작)중 “서울은천국민학교병설유치원”란 다음에 “서울신남성국민학교병설유치원”란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유치원(동부)

6	서울동원국민학교병설유치원	중랑구 망우동 214-4
---	---------------	---------------

유치원(서부)

5	서울창천국민학교병설유치원	마포구 노고산동 산 33-1
---	---------------	-----------------

유치원(남부)

4	서울두산국민학교병설유치원	구로구 독산동 1002-5
---	---------------	----------------

유치원(중부)

5	서울충무국민학교병설유치원	중 구 장충동 173-7
---	---------------	---------------

유치원(강동)

6	서울고명국민학교병설유치원	강동구 명일동 296-1
---	---------------	---------------

유치원(강서)

7	서울내발산국민학교병설유치원	강서구 발산동 707
---	----------------	-------------

유치원(동작)

4	서울신남성국민학교병설유치원	동작구 사당동 199-1
---	----------------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 서울特別市教育·學藝에關한各種手數料徵收條例案(서울特別市教育監 提出)

(11時)

○委員長 李喆鎬 다음은 議事日程 第3項 서울特別市教育·學藝에關한各種手數料徵收條例案을 上程합니다.

(議事棒 3打)

教育廳 關係公務員 나오셔서 提案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管理局長 柳根夏 教育廳 管理局長 柳根夏입니다.

서울特別市教育·學藝에關한各種手數料徵收條例案에 대한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制定理由를 말씀드리면 現行 各種 手數料徵收條例中 地方自治法에 根據하여 制定, 運用하고 있는 條例를 하나로 統合하고, 서울特別市教育廳 및 그 傘下機關의 行政情報에 대한 一般人의 閱覽·複寫要請時 手數料를 徵收하는 根據規定을 마련하며, 또한 手數料를 徵收하는 事項을 보다 細分化하여 規定하려는 것입니다.

두번째로 主要骨子를 말씀드리면 서울特別市教育費特別會計諸證明手數料徵收條例와 서울特別市中學校入學및中·高等學校轉·編入學配定手數料徵收條例를 각각 廢止하여 이를 서울特別市教育·學藝에關한各種手數料徵收條例案으로 統合하고, 一般人이 行政情報 公開資料의 閱覽 또는 複寫 등을 申請할 경우 그에 따른 手數料를 徵收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諸證明에 關한 事項中 手數料를 徵收하는 證明的 種類

를 보다 細分化하여 規定하였으며, 手數料徵收에 대한 根據法令을 目的條項에 明示하였습니다. 社會團體申告에關한法律施行令의 改正으로 手數料 徵收根據가 없어진 서울特別市教育·學藝에關한社會團體登錄에關한手數料徵收條例는 이를 廢止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制定根據는 地方自治法 第128條 및 第130條이며, 別添 案을 參考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提案說明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喆鎬 專門委員의 檢討報告가 있겠습니다.

○專門委員 金長虎 지금부터 서울特別市教育·學藝에關한各種手數料徵收條例案에 대하여 檢討報告드리겠습니다.

(報告)

1. 제안경위

본 조례(안)은 1994년 11월 10일 서울특별시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14일 소관별 당 위원회 회부되었음.

2. 제안사유

현행 각종 수수료징수조례중,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제정·운용하고 있는 조례를 하나로 통합하고, 서울특별시 교육청 및 그 산하기관의 행정정보에 대한 일반인의 열람·복사요청시 수수료를 징수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며, 또한 수수료를 징수하는 사항을 보다 세분화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와 서울특별시 중학교 입학 및 중·고등학교 전·편입학 배정수수료 징수조례를 각각 폐지하여 이를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조례(안)으로 통합 제정함.

○ 일반인의 행정정보 공개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 등을 신청할 경우,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

○ 제증명에 관한 사항중, 수수료를 징수하는 증명의 종류를 보다 세분화하여 규정함.